

2023년도 「인재육성형 중소기업」 모집 공고

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5월 30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

사업 개요

□ (추진목적)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, 그 성과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·지원

※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: 기술능력,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우수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

□ (지원혜택)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*,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(5점) 부여, 워크넷·잡코리아·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기업 구인정보 제공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% 할인 등

* 중소기업 기술개발R&D 등 11여개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시 가점(1점) 부여, 정책 자금 한도확대(60→100억원),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(2점) 부여

□ (지정절차) 신청접수 (5.30 ~ 6.26) → 서면·현장평가(7~8월) → 심의 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(9월)

*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

선정 기준

- (선정 기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
 - ①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,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
 - ② 기술능력,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
 - ③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
- (제외 사항)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적용하지 않는 아래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제외
 -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

3

신청·접수

- (신청·접수 기간) '23.5.30(화) 09:00 ~ '23.6.26(월) 18:00, 4주간
- (신청방법)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청
 - '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산학인, smes.go.kr/sanhakin)
→ 신청관리 → '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 신청'에서 신청
 - ※ 자세한 신청방법은 '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산학인, smes.go.kr/sanhakin) > 알림마당 > 사업공고'의 공고내용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

□ (제출서류) 표준재무제표 등 평가 증빙자료

○ 최근 3년(2020~2022년) 표준재무제표(국세청 홈택스 발급)

* 개인기업은 '22년 재무제표의 경우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(신고)로 대체 가능

○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[귀속연도 : 2022년(2023.3월 신고자료)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]

○ 기업 및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(신청양식 참조)

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국세 : 홈택스 발급, 지방세 : 민원24 발급)

○ 기타 평가지표 증빙용 작성자료(신청양식 참조)

※ 신청양식은 '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산학인, smes.go.kr/sanhakin) > 알림마당 > 사업공고'의 공고내용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

4

선정절차 및 기준

□ (선정절차) 서면·현장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

구 분	주 요 내 용	추진일정
① 서면평가(70점) 현장평가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과공유 실적, 일자리 증가 수준, 평균급여 및 평균근속연수, 교육훈련 투자 수준 등을 평가 *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현장평가 방법 등을 안내 	'23.7~8월
② 심의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재육성 노력, 인재육성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최종 선정 	'23.9월

□ (서면평가) 이익창출능력(17점), 일자리 양·질(15점), 근무환경(30점), 교육훈련(8점)으로 평가 및 가점부여(최대 2점)

- 평가점수를 4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, 최종 선정기업의 1.5배수 내외를 선정하고, 동점기업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

구분	세부 평가지표
동점기업 처리기준	• (1순위) 종사자1인 평균급여
	• (2순위) 평균 근속연수
	• (3순위) 정규직·비정규직 비율
	• (4순위) 성과공유 실적
	• (5순위) 교육훈련비용

※ 동점 처리기준에 표시된 순위별(세부평가지표) 고득점순으로 선정

□ (현장평가) 인적자원관리(CEO 인재육성 의지 5점, 복지·인프라 수준 10점), 인적자원개발(HRD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수준 15점)을 평가

□ (심의위원회) 서면·현장평가 합산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선정

※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등 자세한 평가방법은 '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산학인, smes.go.kr/sanhakin) > 알림마당 > 사업공고'의 공고내용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

5

문의사항 연락처

기관명	연락처	비고
중소벤처기업부 (인력정책과)	044-204-7448	제도관련 사항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(인력지원처)	055-751-9035, 9829, 9825	시스템 자료 입력방법, 제출서류, 평가지표 등

참고1

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평가지표

□ 서면평가 지표

평가항목		평가지표	평가방법	배점 (점)
결격사유		세금 완납 여부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(법인 및 개인)	세금 체납시 부적격
이 익 창 출 능 력 (17)	성장성	1-1. 매출액증가율	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2년간 평균 매출액증가율 정도	4
		1-2. 매출총액	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총액 정도	3
	수익성	1-3. 영업이익률	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정도	3
		1-4. 총자산이익률	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총자산이익률 정도	4
	안정성	1-5. 자기자본비율	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정도	3
일자리 양·질 (15)	고용증가	2-1. 일자리 양 증가수준	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활용	5
	성과공유	2-2. 성과공유 실적	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활용	10
근 무 환 경 (30)	임금수준	3-1. 종사자1인 평균급여	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1인 평균급여 정도	10
	고용안정	3-2. 평균 근속연수	업력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정도	10
		3-3. 정규직·비정규직 비율	업종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 정규·비정규직 비율 정도	10
교육 훈 련 (8)	인재육성	4-1. 교육훈련비용	업종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1인 월평균 교육훈련비용 정도	8
합 계				70
가 점	재직근로자 대상 인력양성사업 참여 실적			2
	산학협력 마일리지 보유기업			2
	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기업			2

※ 가점은 항목과 관계없이 최대 2점

□ 현장평가 지표

평가항목		평가지표 및 평가방법	배점 (점)
인적자원관리 (HRM)	CEO 인재육성의지 및 인재확보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CEO의 인재육성에 대한 의지 파악(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) · 기업의 인재채용·육성 노력 및 미스매치 해소 노력의 정도를 파악 	5
	복지·인프라 수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시간, 휴가, 복리후생 등 재직자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 ·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 	10
인적자원개발 (HRD)	HRD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수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성장을 위한 인재육성방향 설정 및 지원체계구축 노력을 평가 ·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분야별 역량을 정의하고, 수준에 따른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 수준 평가 	15
합 계			30